

Policy and Law Report _Vol.169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3.1.2.~1.8.) -

January 9, 2023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기획재정부	•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 추진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주재 제1회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해 최대 25%+α 세액공제 확대 추진 -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8%에서 15%로, 중소기업의 경우 16%에서 25%까지 대폭 상향 -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공제까지 감안할 경우,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 적용 가능 ② 임시투자세액공제'23년 한시 도입 → 기업 전체 투자 촉진 -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2%p씩 상향하여,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 적용 -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로 상향 조정 -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세액공제 적용	2023-01-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3년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사업 종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6조 6,726억원을 투자하는 '2023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힘 주요 내용으로는 ① 첨단바이오(5,563억원)·탄소중립(1,473억원)·디지털 혁신기술(8,059억원) 등 미래 핵심기술 개발에 2023년 3조 4천억원 지원 ② 자율성과 전략성을 겸비한 기초연구 예산 확대(2조 629억원, +2.5%) ③ 차세대 발사체 개발(290억원), 뇌과학 융합기술(68억원), 양자기술개발선도(양자센서, 71억원) 등 미래 기술 선점을 위한 신규 사업 착수 ④ 대형연구시설 사업 사전검토 체계 마련, 최고 전문가 중심의 평가위원 구성 등 연구개발 절차 개선도 병행 ⑤ 연구개발의 도전·혁신성을 강화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고도화 방향도 논의	2023-01-02

부처	내용	일시
	2023년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분야별 예산현황 기초연구 2조 629억원 - 개인기초연구, 집단연구지원, 기초연구기반구축 등 원천연구 3조 4,524억원 - 원천기술개발사업(1조 3,689억원) - ICT 연구개발사업(1조 879억원) - 우주·해양극지 개발사업(4,430억원) - ICT표준화·국제공동연구(461억원) - 거대공공연구개발사업(5,063억원) 기초연구 4,618억원 - 과학기술국제화사업(459억원)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3,190억원) - ICT 기반조성사업(969억원) 인력양성 3,279억원 - 과학기술·ICT인력양성사업 사업화 3,674억원 - 산학연협력 / 성과활용 / 혁신기업 육성 6조 6,726억원 약 3.9% 증가 6조 4,161억원 < 3대 분야 10대 중점 투자방향 > 미래 핵심기술을 선점하고 연구성과의 현장 확산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 미래 핵심기술 선점 - 반도체, 첨단 바이오 등 주력 전략기술의 초격차 확보 - 독자 역량 및 산업 생태계를 갖춘 글로벌 우주강국 도약 - 양자, 차세대 모빌리티 등 미래 도전적 분야 기술경쟁력 강화 - AI, 5G·6G 등 디지털 혁신기술 확보 및 융합 확산 과학기술·ICT 기반 및 역량 강화 - 자율성과 전략성을 겸비한 기초연구로 질적 도약 - 미래 과학기술·ICT 분야를 선도할 핵심인재 양성 - 핵심 연구 인프라 확충, 전략적 국제협력 등 기반 강화 현장으로 연구성과 확산 - 탄소중립 실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 혁신 연구개발 성과를 지역과 산업으로 확산 - 과학기술·ICT 기반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연구개발 강화 연구개발 제도 개선 - 대형시설사업 사전검토 - 전문가 중심의 평가위원 구성 - 연구자 중심 연구관리	

부처	내용	일시
산업통상 자원부	•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약 5.6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지원 계획을 담은 「2023년도 산업기술 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연구개발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함 ’23년 산업부 R&D 예산은 새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 기조 속에서도 ’22년 5.5조원 대비 2.3% 증가한 5조 6,711억원 규모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함 산업부는 ’18년 이후, 핵심 소재의 공급망 위기, 코로나 19 확산 등 경제 위기 극복과 국가 전략 기술 확보를 통한 미래 신시장 창출을 위하여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18년) 3조1,580억원 → (’19년) 3조2,068억원 → (’20년) 4조1,718억원 → (’21년) 4조9,518억원 → (’22년) 5조5,415억원 → (’23년) 5조6,711억원 (연평균 증가율 12.4%) ’23년 산업기술 R&D 예산은 새 정부의 국정비전 중 하나인 ‘역동적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기로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 (’22년) 5,959억원 → (’23년) 6,477억원 (8.7% ↑) ② 산업공급망 안정(신산업 통상전략) : (’22년) 14,457억원 → (’23년) 14,958억원 (3.5% ↑) ③ 주력산업 고도화 : (’22년) 9,188억원 → (’23년) 10,222억원 (13.1% ↑) ④ 수요자지향 R&D 혁신 : (’22년) 7,292억원 → (’23년) 7,952억원 (9.1% ↑) ⑤ 원전생태계 강화 : (’22년) 1,674억원 → (’23년) 1,736억원 (3.7% ↑) ⑥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육성 : (’22년) 7,327억원 → (’23년) 7,156억원 (△2.3%) ⑦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지원 : (’22년) 4,246억원 → (’23년) 4,038억원 (△4.9%)	2022-12-27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3.1.3.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공개하는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 사업의 추진계획에 해당 기관 소프트웨어사업의 총 사업 기간, 연도별 사업 추진내용 등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공공 부문이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추진계획을 중기적 관점에서 예측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34조 제3항 신설)	2023-01-03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3.1.3. 시행)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데이터 품질인증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을 갖추어 지정 신청서에 데이터 품질인증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은 데이터 내용의 안전성, 유효성 및 정확성, 데이터 구조의 일관성 등에 관한 품질기준에 따라 데이터 품질인증을 하도록 하여 데이터 품질 향상을 통해 데이터의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5까지 신설, 제28조제2항제5호의 2 및 제5호의3 신설, 제40조 신설 등)	2023-01-03
행정안전부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23.7.4. 시행 예정, 다만,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석유 저장시설 등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화재 등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의 소유자·점유자 등이 정하는 자체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를 소방청장이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제조소 등의 소유자·점유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종전에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저장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만 처벌하였으나,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 유출 등으로 인명피해 등을 발생시킨 경우 불법의 정도가 더 큰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 유출 등으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2023-01-03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17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9조제1항제6호의2 신설)	
산업통상 자원부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4.4. 시행 예정) 산업기술침해행위의 요건을 완화하여,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 한 이익 또는 대상기관의 손해 발생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그 유출 한 산업기술을 사용, 공개 또는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및 국가핵심기술의 국외 유출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적법한 승인 또는 신고를 거치지 않고 해외인수·합병 등을 하는 행위를 산업기술침해행위에 포함하도록 함 (제14조제2호, 제6호 및 제6호의2)	2023- 01-03
환경부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1.4. 시행 예정)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신고사항 중 중점관 리물질의 노출정보, 함유량, 용도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화학물질 등록·신고 및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등과 관련된 권리·의무 의 승계를 규정하고, 승계한 자로 하여금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 도록 함 (제33조 신설, 제45조의2 신설, 제46조제6호 및 제7호 신설, 제54조제1항 제4 호의2 및 제7호 신설)	2023- 01-03
중소벤처 기업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7.4. 시행 예정, 다만, 제21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5조제1항제1호의2·제 14호, 제28조제1항제1호, 제4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 납품대금 연동제의 도입을 통하여 수탁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 문화 확산 및 공 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주요 원재료"를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 의 10 이상인 원재료로 정하고, "납품대금 연동"을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정함 (제2조제12호 및 제13호 신설)	2023- 01-03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② 위탁기업이 발급하는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 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 정요건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함 (제21조제1항제4호 신설) ③ 위탁기업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 하기로 합의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제21조제3항 신설) ④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제21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에 5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제21조제4항 및 제43조제2항제2호 신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상생협력 및 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납품 대금 연동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도록 함 (제21조 제5항 신설) ⑥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등을 선 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제22 조의3 및 제22조의4 신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023.7.4. 시행 예정) 산업재산권과 유사한 소프트웨어 등 저작권에 대해서도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 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 임직원 여부에 따른 차등규정을 도입하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벤처기업 정관 및 주주 총회 특별결의 사항을 규정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해 임직원의 경우 2년 이 상 재임 또는 재직하도록 하며, 임직원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 도록 하는 한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 또는 철회하려는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 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는 상법에 우선하여 이 법이 적용됨을 명시함 (제2조제10항, 제6조제1항, 제11조의3제2항, 제11조의5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3, 제16조의4부터 제16조의6까지 신설)	2023-01-03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7.4. 시행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해소 및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상공인 생업현장 디지털 혁신모델 확산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업무 전담조직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디지털전환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혁신에 필요한 정보통신 인프라 및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등에 대한 디지털화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디지털 경제에서의 소상공인 경쟁력을 제고함 (제3장의2(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7까지) 신설, 제17조제5항제4호 등)	2023-01-03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식품 의약품 안전처	•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현재 행정처분 기준 적용일을 집행일(실제 행정처분 효력이 발생한 날)로 규정하고 있어, 집행일과 효력 발생일 사이 위반 시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행정제재 시 위반행위 횟수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행정제재 시 위반행위 횟수 산정 시점 명확화 (안 별표1 Ⅰ. 일반기준) - 현재 행정처분 기준 적용일을 집행일(실제 행정처분 효력이 발생한 날)로 규정하고 있어, 집행일과 효력 발생일 사이 위반 시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행정 제재 시 위반행위 횟수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의견 제시기간 : 2023/1/5(목)~2/14(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진단기기정책과로 제출	2023-01-05
금융 위원회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경직적 제재를 합리화하고, 감독당국의 제한된 인력으로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민원 등 분야에 대해 보험협회 등 민간영역에서 역할을 분담하는 개선을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전속설계사 교차모집 제도 완화 (안 제85조) - 보험설계사가 본인이 전속된 회사의 자회사 상품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 ②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 합리화 (안 제86조, 제136조) - 업무정지·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설계사를 등록취소하는 가중제재의 기산점을 5년으로 두고, 경미한 법규위반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경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③ 보험협회의 일반민원 처리 허용 (안 제175조) - 보험계약 관련 단순질의, 보험회사간 자율조정 사항 등 일반민원을 보험협회에서 상담·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023-01-06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④ 기초서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안 제196조) -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부당이득금액에 비례하여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부과기준도 합리화 ⑤ 책임준비금 과다적립에 대한 과태료 부과 면제 (안 제209조제1항제10호의2) - 보험회사 과실에 따른 책임준비금 과다적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⑥ 실효성 없는 금지규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안 제209조제1항제8호의2, 안 제7항제18호) - 보험회사의 자회사 업무 추가·변경 행위 및 허위·부실·지연 손해사정 등 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의견 제시기간 : 2023/1/6(금)~2/15(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금융위원회(보험과)로 제출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0인)」 IT기술의 발전과 감염증 확산 등으로 인해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가 급속하게 확대됨에 따라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와 같이 우편 고지문을 대체하여 탄소배출을 줄이고, 개인정보 노출, 오배송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전자 등기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음 행정·공공기관 등 모바일 전자고지 사업자 등은 이용자 식별자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으나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 사업자인 플랫폼 기업들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만을 보유하고 있음 따라서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행정·공공기관 등의 이용자 주민등록번호를 CI로 일괄변환하여 모바일 전자고지사업자와 이용자를 공동 식별할 수 있어야 함 그리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이 ‘모바일 전자고지’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주민번호 수집·처리 법적근거를 보유한 행정·공공기관 등의 요청에 한하여,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번호를 CI로 일괄 변환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였음 다만 해당 임시허가 유효기간은 최장 4년이며, 서비스 유지를 위해서는 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CI 일괄변환을 위한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본 개정안을 발의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주민번호를 CI로 일괄 변환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확인기관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안 제23조의5 신설) ②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CI를 일괄변환한 본인확인기관 및 이를 제공받은 제3자에 대해 CI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여, 이들에게 CI 처리 상 안전성 확보, 주민번호와 별도 보관, 분실·도난·유출 방지 등을 위한 조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함 (안 제23조의6 신설 및 안 제76조 등)	2023-01-03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그런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는 총한도액 등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총한도액 등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다음 연도에 실시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사업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 신설 등)	2023-01-0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음란정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및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정보통신망에서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가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마약류 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효과적인 유통방지를 위해서는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불법정보의 범주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가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 신설 등)	2023-01-06
보건복지위원회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2인)」 모바일·전자기기 등 디지털정보 접근성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종이 문서를 줄여 저탄소 친환경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의약품 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대한 요구 역시 높아지고 있음	2023-01-06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또한 의약품 정보의 전자화는 언제나 쉽고 간편하고 가독성 높게 의약품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최신 정보 제공에도 용이해 이미 유럽, 싱가포르, 대만, 일본 등에서도 이미 전자적 정보 제공이 허용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약사법에는 의약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신고) 사항에 대한 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대한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논의 및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함 이에 따라 의약품의 전자적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전문의약품의 경우에는 용기나 포장에 전자적 정보 제공을 위한 번호, 기호, 기타의 부호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첨부 문서에 기재하는 사항을 전자적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56조제1항, 제58조제2항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사업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급성장 하고 있는 플랫폼사업에 종사하는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의무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아울러 사업장 근로자와 달리 배달종사자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이루어 못하고 있어 배달종사자의 안전사고 위험율이 증가함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배달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플랫폼사업주에게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며, 의무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배달종사자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안 제78조제2항·제3항 및 제78조의2 신설, 안 제175조제5항제1호)	2023-01-03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2인)」 전기차, 수소차 등 운행단계에서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자동차는 대기환경 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세계 주요국과 유수의 자동차 기업들은 무공해자동차로의 전환에 나서고 있음 우리나라도 그동안 구매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충전시설도 신속히 확충하는 등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펼쳐왔고, 그 결과 무공해자동차와 충전시설이 도입 초기단계를 넘어 최근 급증 추세에 있으나, 무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제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2023-01-03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특히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는 환경적으로 우수한 자동차를 보급하고 그 운영을 지원·관리하는 내용이 저공해자동차 중심으로 규정되어있어, 무공해자동차 정의, 보조금 관리 등에 대한 법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무공해자동차 중심 저공해자동차 보급 정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공해자동차의 한 종류로서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보조금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성능평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성능평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 성능평가를 내실화하는 등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법률로 상향입법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함 (안 제2조) ②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성능평가를 받거나, 성능평가의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함 (안 제58조의2제2항 신설) ③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 미승인 시 제재 수준을 당초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함 (안 제94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생산단계·유통단계에서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부터 태양광 보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현재 태양광 보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에 관한 제도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에 태양광 패널을 명시하여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제1항)	2023-01-04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폭언 등에 의해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2023-01-04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관련 규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실효성있는 법적 뒷받침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콜센터 상담사를 비롯한 고객응대근로자 등의 근로자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도 인간 존엄의 가치와 노동 인격이 파괴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폭언등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하거나 3회 이상 이어질 경우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업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근로자들의 즉각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3회 이상의 업무 중단을 발생시킨 고객에게는 유선 및 대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폭언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대표 등의 요청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업주로 하여금 고발하도록 하며, 고객응대근로자의 고충 처리를 위한 고충처리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등 고객응대근로자 등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 하고자 함 (안 제41조, 안 제52조, 안 제63조 등)	
국토교통 위원회	• 「<u>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u>」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그런데, 행위자인 건설업자에 대해서 이 법 제98조 양벌규정이 부재하여 건설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입법미비가 지적됨 이에 건설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위반행위를 양벌규정에 명시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건설사업자의 적정시공과 책임성 등을 강화해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과 품질 관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98조제2항)	2023-01-04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상임위	아래 【별첨1】 참조		
국회도서관	1/11(수)	「World & Law」 2023-1호 발간 - 지금 세계는 노담 실천 중?	
입법조사처	1/11(수) 14:00	「전세사기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분양대행 제도개선」 세미나 개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미래연구원	1/9(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1호 발간 - 2050년 대한민국 미래전망과 대응 전략	

[별첨1] 제401회 국회(정기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정개특위	1/11(수) 10:00	정치관계법 개선소위	-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관련 법안 심사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1/9(월) 13:00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박성민·송재호·박수영 의원실, (사)균형성장혁신	의원회관 1소회의실
1/10(화) 10:00	다당제 필요성과 가능성	안민석·김두관·박범계· 전해철·홍익표 의원실	의원회관 1간담회실
1/10(화) 10:00	종부세 왜 폐지해야 하는가?	조경태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1/10(화) 10:00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연속정책토론회 4차 - '이젠 남성을 집으로' 남성의 돌봄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남인순·양금희·박광운· 최연숙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실
1/11(수) 10:00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	박주민·이용우 의원실,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1/11(수) 10:00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연속정책토론회 5차 - 초저출생 대응을 위한 재정 확보 및 거버넌스 구축방안은?	남인순·양금희·박광운· 최연숙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제168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미래연구원	1/2(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0호 발간 - ‘양극화’문제에 대한 국회의 대응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1/3(화) 10:00	윤석열 정부의 건축기조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후퇴 문제점과 대응 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정춘숙·강훈식·김민석 의원실, 참여연대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1/4(수) 14:00	2023 힘내라 우리경제 도약하는 한국금융	윤창현 의원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여의도연구원	의원회관 1세미나실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 | | |
|---|----------------|------------------------|
| • 백대용 변호사 | T. 02-316-4630 | E. dybaek@shinkim.com |
|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외국변호사 | T. 02-316-4212 | E. hpak@shinkim.com |
| • 김성범 변호사 | T. 02-316-4432 | E. sbkim@shinkim.com |
| • 홍정아 (Claudia Hong) 외국변호사 | T. 02-316-4487 | E. cahong@shinkim.com |
| • 안현정 변호사 | T. 02-316-1637 | E. hjeahn@shinkim.com |
| • 방세희 변호사 | T. 02-316-1773 | E. shbang@shinkim.com |
| • 노지은 변호사 | T. 02-316-2573 | E. jeroh@shinkim.com |
| • 성재열 변호사 | T. 02-316-1777 | E. jysung@shinkim.com |
| • 조성환 변호사 | T. 02-316-2596 | E. suhcho@shinkim.com |
| • 박건백 변호사 | T. 02-316-4670 | E. gbapark@shinkim.com |
| • 나인선 변호사 | T. 02-316-1795 | E. isna@shinkim.com |
| • 나인경 변호사 | T. 02-316-7251 | E. ikra@shinkim.com |
| • 김은혜 변호사 | T. 02-316-1736 | E. ehkim@shinkim.com |
| • 서치원 변호사 | T. 02-316-7225 | E. cwseo@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